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76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6

I. 개요

1.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5. 22.
- (3) 회 부 일 : 2025. 5.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하면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u>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u>)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u>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4. (생략) ② ~ ④ (생략)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u>18개월</u>----- -----<u>18개월</u>----- -----<u>. <단서 삭제></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3. 20.)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9191호)이 법률 제20903호로 공포(2025. 4. 2.)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종전 6개월까지만 인정되던 군복무크레딧의 보장성이 강화되어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부터는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런데, 군복무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¹⁾의 복무기간은 2025년 6월 현재 18~21개월이므로 복무를 모두 마친 경우 군복무크레딧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12개월)은 실제 복무기간의 약 57.1~66.7% 수준임.
- 이에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확대하면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법률 제20903호”라 한다)에 따른 군복무크레딧보다 보장성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이 삭제될 경우
연평균 1,300명가량이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현역병 등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592	1,254	1,464	1,294	1,060
현역병	1,408	1,017	1,055	844	636
전환복무자	13	5	-	-	-
상근예비역	62	67	39	34	16
사회복무요원	109	165	370	416	408

주: 전환복무는 2022년부터 배정 중단

자료: 병무청

□ 다만, 법률 제20903호는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 등이 상호 조율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제적 측면에서는 안 부칙에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어느 경우부터 적용할지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과 관련하여서는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면서 최저 복무기간(6개월) 요건을 삭제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한지아의의원(의안번호 제8591호), 위성곤의원(의안번호 제9304호) 및 이수진의의원(의안번호 제11651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 보건복지부는 군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6